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1013호

「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(국토교통부훈령)」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28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훈령안
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「항공통신업무종사자 교육훈련 규정」의 제명을 「항공통신업무 종사자 자격 및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고 항공통신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적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이동통신업무 종사자의 자격 기준 및 자격 부여 방식 마련(안 제23조)

-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(자격) 등에 근거하여 항공이동통신업무 수

행에 필요한 교육, 평가, 경력 등의 기준 수립 및 자격부여에 대한 행정
사항 규정

나. 항공고정통신업무와 항공이동통신업무에 대한 용어의 정의 신설(안 제2조
의4, 제2조의5)

다. 교육훈련 수료증 발급자를 장관에서 소속기관 소속 부서장으로 변경(안 제21조)

○ 「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」에서의 교육훈련 수료증과 형식을 통일
하여 소속기관 부서장의 서명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료증 발급

라. 항공통신업무 종사자 개인이력 및 교육훈련 실적의 관리방식 변경(안 제20조)

○ 기존 개인별로 작성·유지하는 방식에서 전자시스템(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
템)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
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건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
항행위성정책과((우)30103)

- 전자우편 : yong404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37(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)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(전화 (044) 201 - 4362, 팩스 044-201-563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